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28 선고 2021가합4025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1. A

2. B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윤미화, 황선아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희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별지 목록 1. 제1 내지 11 기재 각 상표권 및 별지 목록 1. 제12 내지 13 기재 각 특허권에 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20. 5. 20.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2020. 5. 20. 접수 E로 마친 질권설정등록에 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였으나, 이하 변경 전 · 후를 구분하지 않고 ‘F’이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자들이다.

나. 주식회사 D의 전환 사채 발행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7. 3. 28.경 F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했고, F은 2017. 3. 29. D에게 전환사채 대금 25억 원을 지급했다.

제1조 (발행조건)

1. 사채의 명칭: D 제160회 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기명식 전환사채
3. 발행하는 사채의 총액: 25억 원
4. F의 인수금액: 25억 원
5. F의 인수금액: 25억 원
6. 사채의 발행가액: 25억 원
7. 만기보장수익률: 연 5%
8. 만기보장수익률: 연 5%
9. 사채의 만기일: 2020. 3. 27.
10. 사채의 청약일: 2017. 3. 28.
11. 사채의 발행일 및 납입기일: 2017. 3. 28.

12. 이자지급: 사채의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상환조건)

1. 원리금 상환일: 2020. 3. 28. D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

2. 원리금 지급방법: F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제3조(전환조건)

5. 전환 청구기간: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사채의 만기일까지

다. D의 질권설정

D는 2020. 5. 20.경 피고와 별지 목록 1. 제1 내지 11 기재 각 상표권, 별지 목록 1. 제12 내지 13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질권(채권액 70억 원, 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위 질권을 설정해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환사채 만기일이 도래했고, F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F을 대위하여 위 전환사채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D는 F에게 원금 25억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무자력 상태이고,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질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F 대표이사가 도주 상태여서 F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F을 대위하여 F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환사채금은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F은 그 의사결정 주체가 없는 상태여서 그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D가 F에게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D는 2017년경 중국 진출이 좌절된 후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경 피고와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D는 피고에게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원천기술 및 전문 인력 등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 특히 피고는 지금까지 D에게 약 150억 원 이상을 지식재산권, 인력 및 기술 지원대가 등으로 지급했다. 현재 피고가 개발 중인 플랫폼에서 D의 지식재산권은 원천기술로서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피고는 지금까지 지원한 자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질권설정을 요구했고, D는 그에 따라 질권을 설정했다. 이러한 질권설정은 D가 자금을 융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재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 만기일은 2020. 3. 27.경이고, F이 전환 청구기간 내에 전환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에게 위 전환사채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D가 F이 지정한 계좌로 전환사채금을 상환하기로 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현재 D의 대표이사가 소재불명이어서 그 계좌를 아직 지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D가 전환사채금을 반환할 때에 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지, D가 전환사채금을 반환할 의무 자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 사건 전환사채 만기일이 도래한 이상, D는 전환사채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F이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D에게 전환사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을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사업의 계속 추진을 통한 채무 변제력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는 2017년경부터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그 체불액이 2018년 1월경에는 약 28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그 임금 체불 문제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무렵에도 해결되지 않았다(임금체불과 관련된 D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그 변호인은 2021년 말까지 체불 임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D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D는 2018. 2. 27.경 피고와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D의 분산처리기술과 기술개발담당 이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위 업무협약에 따라 D와 피고는 2018. 6. 11.경 다시 합의를 하면서, D는 피고에게 보유 중인 모든 프로그램 소스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피고는 D에게 최대 2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는 D에게 약 150억 원을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표 및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질권의 채권액은 70억 원에 불과하고, 이 역시 그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③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업무협약이나 합의는 D가 보유 중인 상표권 및 특허권에 대한 담보 설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 주장과 같이 D의 상표권 및 특허권이 피고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위 업무협약이나 합의 당시에 그에 대한 담보 설정에 관하여 정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위 업무협약과 합의를 한지 약 2년이 지난 후이자 이 사건 전환사채금의 만기가 도래한지 약 2달 정도가 지나서 이루어졌다.

3) 소결

피고와 D가 체결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에 관하여 마친 질권설정등록에 대하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숙, 판사 윤준석, 판사 유영화

별지